3 의료폐기물 분류 관련 질의응답 사례

# 의료폐기물 보관 및 기타



## 01

**의료폐기물 종류별로 하나의 전용용기에 혼합해도 되는지?**

**격리의료폐기물**
**조직물류폐기물**(치아제외)
**손상성폐기물**
**액체상태의 폐기물**
사용할 경우



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용기
보관불가




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
보관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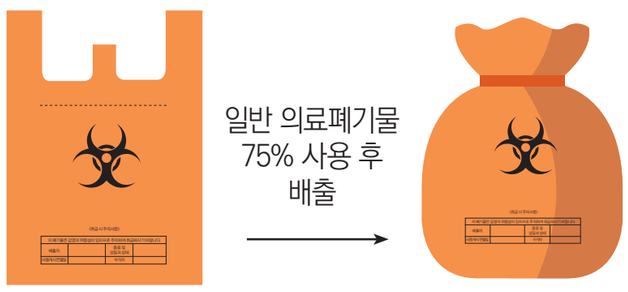
'종류 및 성질과 상태'에는 혼합 보관하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기재하고,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류로 전자태그를 발행·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[ 혼합 보관할 경우에는 각각의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을 적용하여 배출 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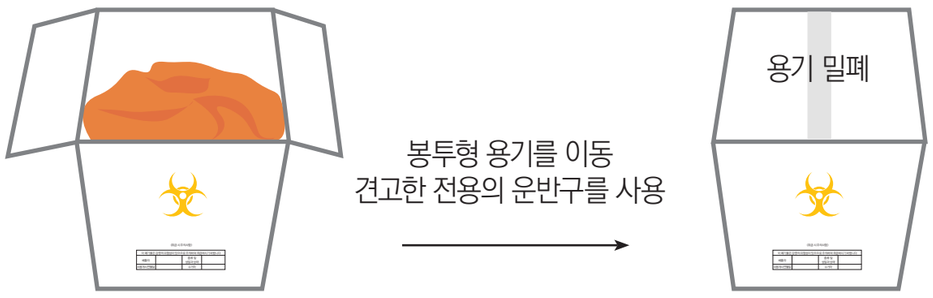
**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의료폐기물을 혼합보관 가능**

## 02

**병실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봉투형 용기에 담고, 봉투형 용기가 75% 사용 후, 폐기물 종류에 맞는 전용용기에 봉투채로 배출해도 되는지?**




의료폐기물 전용봉투




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

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하는 의료폐기물(격리의료폐기물, 조직물류폐기물, 손상성폐기물과 액체상태의 폐기물) 외의 의료폐기물은 봉투형 용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, **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여야 합니다.**
**(봉투형 용기를 이동할 때에는 뚜껑이 있고 견고한 전용의 운반구를 사용)**

## 0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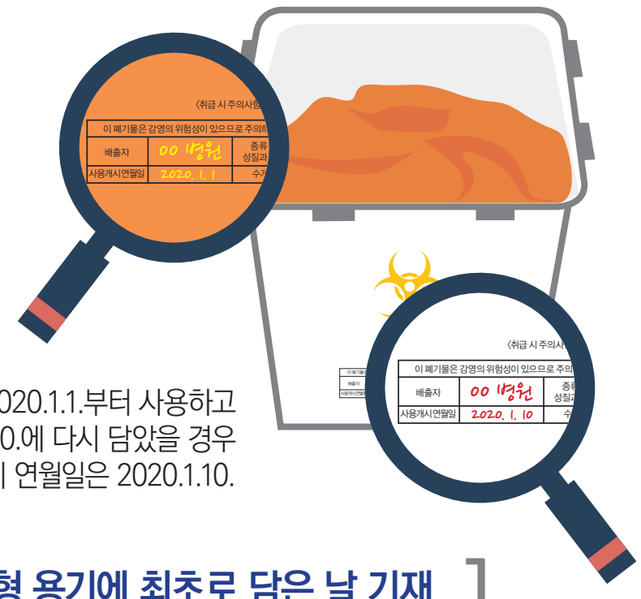
**봉투형 용기에 담겨있는 것을 상자형 용기에 담아서 배출할 때, 날짜기재는 봉투형 용기에 쓴 날짜로 해야하는 건지?**

**봉투형 용기**
사용시




[ 폐기물을 최초로 넣은 날 기준으로
봉투형 용기 외부에 사용개시일자를 기재 ]

**상자형 용기**에
다시 담아 사용시




봉투형 용기에 일반의료폐기물을 2020.1.1.부터 사용하고
상자형 용기에 2020.01.10.에 다시 담았을 경우
상자형 용기의 사용개시 연월일은 2020.1.10.

[ **봉투형 용기를 상자형 용기에 최초로 담은 날 기재**
(봉투형 용기 사용개시일부터 기산됨) ]

환경부 한국환경공단